

● **법무부고시 제2023-21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법무부장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6. 14.부터 시행한다.

감호위탁 보호시설

순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 소
1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2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9
3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4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5	경기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
6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
7	강원동부지부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56
8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19
9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47번길 118
10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
11	경북지부	경북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57
1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13	경남지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14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8
15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축고개옛길 127-4
16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